

자산관리위탁계약 (2차)변경계약서

주식회사 디씨알이대우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갑”)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을”)은 2024년 12월 16일에 체결하고 2025년 2월 28일 (1차)변경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서 (이하 통칭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제1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변경 전	변경 후
제 3 조 (위탁업무의 범위 및 내용) 1. (생략) 2. (생략) 3. 부동산의 임대차 가. (생략) 나.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된 사후관리업무(임대료, 관리비, 임대차보증금 등의 청구, 임대부동산의 보수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단, 주택임대관리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는 “을”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되며, i) 부동산의 제반 임대차 활동과 관련하여 주택임대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ii) 주택임대관리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주택임대관리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포함함. 다. (생략) (이하 생략)	제 3 조 (위탁업무의 범위 및 내용) 1. (생략) 2. (생략) 3. 부동산의 임대차 가. (생략) 나.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된 사후관리업무(임대료, 관리비, 임대차보증금 등의 청구, 임대부동산의 보수, <u>주택임대관리회사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부동산의 제반 임대차 활동과 관련한 주택임대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u> 다. (생략) (이하 생략)

제2조 (본 합의서의 효력 등)

- ① "갑"과 "을"은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30일 전 서면 통보 절차 없이 본 합의서에 의해 자산관리위탁계약을 변경하기로 한다.
- ② 본 합의서는 체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③ 자산관리위탁계약 중 본 합의서에 의해 명시적으로 변경된 내용 및 본 합의서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은 본 합의서의 체결로써 효력을 상실하고, 나머지 계약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며 관련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 ④ 본 합의서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합의서의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본 합의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자산관리위탁계약서에 합철하여 보관하기로 한다.

2025년 [3]월 [13]일

“갑”

주식회사 디씨알이대우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대표이사 오 창 우



“을”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대표이사 민 관 식



자산관리위탁계약 (2차)변경계약서

주식회사 디씨알이대우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갑”)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을”)은 2024년 12월 16일에 체결하고 2025년 2월 28일 (1차)변경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서 (이하 통칭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제1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변경 전	변경 후
제 3 조 (위탁업무의 범위 및 내용) 1. (생략) 2. (생략) 3. 부동산의 임대차 가. (생략) 나.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된 사후관리업무(임대료, 관리비, 임대차보증금 등의 청구, 임대부동산의 보수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단, 주택임대관리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는 “을”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되며, i) 부동산의 제반 임대차 활동과 관련하여 주택임대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ii) 주택임대관리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주택임대관리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포함함. 다. (생략) (이하 생략)	제 3 조 (위탁업무의 범위 및 내용) 1. (생략) 2. (생략) 3. 부동산의 임대차 가. (생략) 나.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된 사후관리업무(임대료, 관리비, 임대차보증금 등의 청구, 임대부동산의 보수, <u>주택임대관리회사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부동산의 제반 임대차 활동과 관련한 주택임대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u>) 다. (생략) (이하 생략)

제2조 (본 합의서의 효력 등)

- ① "갑"과 "을"은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30일 전 서면 통보 절차 없이 본 합의서에 의해 자산관리위탁계약을 변경하기로 한다.
- ② 본 합의서는 체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③ 자산관리위탁계약 중 본 합의서에 의해 명시적으로 변경된 내용 및 본 합의서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은 본 합의서의 체결로써 효력을 상실하고, 나머지 계약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며 관련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 ④ 본 합의서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합의서의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본 합의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자산관리위탁계약서에 합철하여 보관하기로 한다.

2025년 [3]월 [3]일

“갑”

주식회사 디씨알이대우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대표이사 오 창 우



“을”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대표이사 민 관 식

